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매일매일 부자적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, 1일 입금횟수 제한 삭제, 분할해지방식 변경, 갱신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~
<p>제1조 적용범위 『<u>매일매일 부자적금</u>』(구 <u>외환은행</u>)(이하 "이 적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 및 적립식 예금약관 (구 외환은행)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(생략)</p> <p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이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, 2회차 이후의 적립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, <u>1일 5회 1,000만원 이내에서</u>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. 단, 만기전 1개월이내에는 추가적립 할 수 없다.</p> <p>제5조 분할인출 이 적금은 가입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<u>선입선출방식에 따라</u>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(생략)</p> <p>제7조 갱신 ① 이 적금은 예금주가 만기일전 갱신 신청하는</p>	<p>제1조 적용범위 『<u>매일매일 부자적금</u>』(이하 "이 적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약관 을 적용한다.</u></p> <p>제2조 ~ 제3조 (좌동)</p> <p>제4조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이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, 2회차 이후의 적립금액은 5만원이상으로, <u>1일 1,000만원 이내에서</u>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. 단, 만기전 1개월이내에는 추가적립 할 수 없다.</p> <p>제5조 분할인출 이 적금은 가입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<u>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</u>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한다.</p> <p>제6조 (좌동)</p> <p>(갱신 조항 삭제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p> <p>구행명 삭제, 기본적용약관 변경</p> <p>1일 5회 제한 삭제</p> <p>분할해지계산 방식 변경</p>

<p>경우 만기일(휴일인 경우는 다음 은행 영업일)에 자동갱신 처리한다. 단, 세금우대,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한 후 갱신 당시 한도초과된 경우와 압류 등 법적지급제한이 있는 계좌는 갱신대상에서 제외된다.</p> <p>② 만기일후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 3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 갱신처리한다.</p> <p>③ 갱신된 이 적금의 이자는 갱신된 날을 예금일로 하여 제6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한다.</p>		
---	--	--

「매일매일 부자적금 특약」

제1조 적용범위

『매일매일 부자적금』(이하 "이 적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약관 을 적용한다.

제2조 가입자격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제3조 가입기간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한다.

제4조 가입금액 및 적립방법

이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, 2회차 이후의 적립금액은 5만원이상으로, 1일 1,000만원 이내에서 정기적립 및 수시적립 할 수 있다. 단, 만기전 1개월이내에는 추가적립 할 수 없다.

제5조 분할인출

이 적금은 가입기간 중 최종 해지분을 포함하여 5회 범위내에서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분할인출이 가능하며,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한다.

제6조 이자

- ① 이 적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 한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금리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